#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3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 : 김 윤 · 서미화 · 모경종

권칠승 • 조인철 • 오세희

위성곤 · 진성준 · 이재정

김재원 · 황정아 · 민병덕

이수진 • 이기헌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등).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것을"을 "것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로 한다.

제1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 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8호까지"를 "제8호까지(제6호의2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7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u>것을</u> 말한다.	<u>것 및 정당한 사유 없이</u>
	보호자(아동에 대한 부양의무
	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u>아니한 것을</u>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제17조(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
	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

7. ~ 11. (생 략)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 1의2. (생략)
- 2. 제3호부터 <u>제8호까지</u>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 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생략)

<신 설>

<u>4.</u> (생 략)

②·③ (생 략)

O)	
T	

7. ~ 11. (현행과 같음) 71조(벌칙) ①	_
<u>.</u>	
1.・1의2. (현행과 같음)	
2 <u>제8호까지(제6호의</u> 2	2
<u>는 제외한다)</u>	_
	_
	_
	_
	_
	_
	_

- 3. (현행과 같음)
- 4. 제6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